행 정 안 전 부

개선권고

제　　목　**기능·인력 재배치를 통한 조직효율화 도모 노력 미흡**

기 관 명　울산 중구, 울산 남구, 울산 동구, 울산 울주군

내　　용

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조직 효율화 및 주민서비스 제고를 위해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쇠퇴기능에서 핵심 및 신규사업 기능 등으로 인력을 재배치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.

< 기능·인력 재배치 기준 >

① (**기능**) 지원기능, 쇠퇴기능에서 **핵심 및 신규사업 기능***으로 재배치

* 예시 : 도시개발·산단 조성 등 신규 행정수요 급증 분야, 지역별 특화 역점과제·국제행사 등 지역현안 분야, 주요 국정과제 또는 법령에 따른 신규 인력소요 분야

② (**현장**) 본청 또는 감독부서에서 **읍면동, 일선 서비스 현장**으로 재배치

③ (**서비스 편차**) 인력 부족으로 안전·복지 등 **행정 서비스의 질이 상대적으로 저하**되어있는 **현업부서 또는 읍면동**으로 재배치

④ (**근로시간**) 공직내 **장시간 근로환경 개선**이 가능하도록 인력을 **적정 배치**

지방자치단체는 동 지침에 따라, 일반직 정원의 1% 이상을 재배치 대상으로 하되, 인력운영 여건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재배치를 실시하여야 하나, 아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연속해서 2년 이상 목표치 미만 실적을 보임으로써 이에 대한 개선노력이 필요하다.

< 기능·인력 재배치 미흡 사례 >

연번	지자체명	재배치 달성률(%)			비고
		'18년	'19년	'20년	
1	울산 중구	0.48	0.31	0.31	2년이상 1%미만
2	울산 남구	1.11	0.13	0.25	〃
3	울산 동구	-	0.58	-	〃
4	울산 울주군	0.76	0.51	0.40	〃

조치할 사항

울산 중구청장, 울산 남구청장, 울산 동구청장, 울산 울주군수께서는

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쇠퇴 분야의 인력을 일선 현장 및 신규 핵심사업 분야로 재배치할 수 있도록 조직 및 인력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. (개선권고)

행 정 안 전 부

시정요구

제　　목　**울산광역시 및 관할 구·군 소속 위원회 운영 부적정**

기 관 명　울산광역시, 울산 중구, 울산 남구, 울산 동구, 울산 울주군

내　　용

행정안전부는 「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('15.9월)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」('16~'20년)을 통해 개최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인 위원회에 대한 정비방안을 통보한 바 있다.

이는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,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세부 정비방안으로는 위원회 기능 및 필요성을 자체 검토 후 실효성·안건 특성 등에 따라 위원회 폐지, 협의체 전환 등을 실시(조례 등 근거규정 개정·폐지 포함)할 것을 안내하였다.

【 위원회 정비 기준 】

1. **폐지** : 목적 달성 등 존치 필요성이 소멸된 위원회
2. **통폐합** : 동일 법령 또는 동일 부처 소관으로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
3. **존속기한 설정** : 영구 존속사유가 없는 경우 존속기한 명시(5년 이내)
4. **협의체 전환** : 민간위원 참여 필요성이 적은 내부 행정에 관한 심의 위원회
5. **비상설화** :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경우

* 사실상 비상설 운영하는 경우(위원 미구성 포함)에도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비상설 운영 명시 필요

※ 조문(예시) :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심의·의결후 자동해산한다.

이와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및 산하 군·구에 대한 위원회 운영현황을 점검한 결과, 법령상 임의 설치가 가능하거나 조례 등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는 위원회 중 최근 3년간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의 경우, 존속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기와 같이 정비하여야 하나, 일부 위원회가 그대로 존치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. (위반사항 : 붙임)

조치할 사항

울산광역시장, 울산 중구청장, 울산 남구청장, 울산 동구청장, 울산 울주군수께서는

상기 「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」에 부합하도록 최근 3년간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폐지 등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,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시정요구)

【붙임】

<조례 등에 근거를 두고 최근 3년간 미개최 위원회 현황>

자치단체명	위원회명	설치근거			위원수
		법령 (강행)	법령 (임의)	조례 등	
울산광역시	시민신문고위원회자문위원회			○	10
	지방소비자정책위원회		○		0
	건강도시위원회			○	19
	자살예방위원회			○	12
	문화관광해설사배치심사위원회			○	0
	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	○			9
	울산시립미술관 운영위원회			○	11
	농수산물도매시장 거래분쟁조정위원회		○		8
울산 중구	환경미화원관리위원회			○	7
	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		○		16
	도시재생위원회		○		16
울산 남구	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			○	8
	지역건설활성화추진위원회			○	13
	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			○	14
울산 동구	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			○	7
	노사민정협의회		○		20
	일산수산물판매센터운영위원회			○	9
	사회복지사처우개선지원협의회			○	12
	환경공무직징계위원회			○	7
	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		○		14
	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		○		20
울산 울주군	청렴자문위원회		○		7
	공유토지분할위원회	○			0
	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			○	10
	아동·여성보호지역연대위원회			○	12
	해양레저산업자문위원회			○	14
	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		○		24